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공지사항	3
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안내	3
첨부파일(2)	3

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안내

작성일 2022.01.19 16:02 등록자 안전재난교통과 조회수 264

- 첨부파일(2)  220113 행정안전부-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(최종).pdf 33 hit/4.88 MB [다운로드](#) [미리보기](#)
 210903 행정안전부-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하철 광고 1면.... 17 hit/6.79 MB [다운로드](#)





인증절차

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
우선 실시한 이후
인증기관에 인증 심사를
신청하여 인증 추진

내진성능평가 후
인증신청

건축주 → 인증기관



인증
심사

인증기관



인증서·인증명판
교부

인증기관 → 건축주



행정안전부

****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**** ○ (사업 목적) 강제할 수 없는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및 내진안전성 증진을 위해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○ (사업 대상) 지진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민간건축물(공공 제외) ○ (사업 기간) '22.1.1 ~ 12.31. ○ (지원 형태) -성능평가비(최대 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%, 지방비 30%, 민간자부담 10%) -인증수수료(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%, 지방비 30%, 민간자부담 10%) * 지방비 부담률은 30% 원칙.단, 재정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 가능 * 국비 기준, 1건당 최대 지원액은 2,400만(성능평가1,800+인증수수료600)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교통과 061)430-3934로 문의 바랍니다.

목록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
RESERVED.

GANGJIN

Web Contents

